

1. 개정이유

위험공종 작업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 신설하여 승인된 이외의 위험공종 작업 시행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검토·확인받은 위험공종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시공자로부터 변경된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·확인하도록 함
(안 제56조제3항, 안 제86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설기술진흥법·시행령·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
일부개정고시안

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영 제56조제1항제1호”를 “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·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·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71조 부칙 외의 부분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334호)”을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2018년 7월 1일”을 “2024년 7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